서울특별시영등포구결산검사위원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47

제안년월일 : 2003. 5. 12.
제 안 자 : 박정자의원외6인

1. 주 문

1. 결산검사위원 :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
2. 선임방법
   가.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 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방안지지결의(안)

의안 번호	48

발의년월일 : 2003. 5. 20
발 의 자 : 이용주의원외7인

1. 주 문

○ 강남지역의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의 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건설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영등포구민과 구의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여 결의코자 함.

2. 제안이유

1.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의 교통 원활화와 남북간의 간선도로 연계체계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계획중인 바,

2. 우리구 의회는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중 고가도로구간 일부를 지하화하여 건설하는데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함.